

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1658
----------	------

2020년 9월 4일
환경수자원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0년 7월 13일, 서윤기 의원 외 42명 발의
- 나. 회부일자 : 2020년 7월 14일
- 다. 상정일자 :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서울특별시의회 제2차
환경수자원위원회 2020년 9월 4일 상정·의결(수정안 가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[제안 설명자: 서윤기 의원]

- 가. 제안이유
 - 「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」 제8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1)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근거를 규정함(안 제23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참조

4. 검토보고 요지 [수석전문위원 : 이재효]

가. 개요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라 과태료 이의신청 절차에 대해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것임.

나. 검토의견

-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는 2020년 4월 2일, 현재 시행중인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중 인권영향평가 기준에 맞지 않는 62개 자치법규의 96개 조항에 대한 개정을 권고한 바 있음.

〈자치법규 분야 인권영향평가 권고내용 중 현행 조례 관련 사항〉

연번	인권영향평가 항목	개정 권고 조항	권고사유
6	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미비로 인한 구제권 제약	20	과태료가 부과·징수되는 경우,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구제 절차(조항)를 마련하여 시민의 구제권 확보

- 이에 따르면 현행 조례는 과태료 부과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가 누락되어 있는바 시민들의 구제권이 제약받고 있는 상황임.

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과태료가 부과·징수되는 경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구제 절차(조항)를 마련하여 시민들의 구제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음.

다만,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르면 “이의신청”이 아니라 “이의제기”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이 수정이 필요할 것임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생략

7. 수정안 요지

- 상위법인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의 개정사항을 반영
- 과태료 부과·징수와 관련하여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용어를 반영
- 도시공원위원회 위원수 확대

8. 심사결과 : 수정안 가결

9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1658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0년 9월 4일

제안자 : 환경수자원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상위법인 「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」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, 과태료 부과·징수와 관련하여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의 용어를 반영하며, 도시공원위원회 위원수는 폭넓은 전문가 의견 반영을 위해 확대함.

2. 주요 골자

- 상위법 근거조항 수정(안 제3조)
- “이의신청은”을 “이의제기는”로 수정(안 제23조제2항)
- 도시공원위원회 위원수 확대(안 제25조제1항)

3. 참고사항 : 생략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3조 각 호외 부분 중 “제15조제1항제3호사목”을 “제15조제1항제3호
아목”으로 한다.

안 제23조제2항 중 “이의신청은”을 “이의제기는”로 한다.

안 제25조제1항 중 “25명”을 “29명”으로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3조(도시공원의 세분)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(이 하 “법”이라 한다) <u>제15조제1항제3호사</u> 목의 도시공원 조례가 정하는 주제공원은 다 음 각호와 같다.</p>	<p>제3조(도시공원의 세분) ----- ----- ----- <u>제15조제1항제3호사</u> 목----- ----- -----.</p>	<p>제3조(도시공원의 세분) ----- ----- ----- <u>제15조제1항제3호사</u> 목----- ----- -----.</p>
<p>제23조(<u>과태료 부과·징수</u>) 시장이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은 영 제51조제1항 별표 4와 같다. <u><신 설></u></p>	<p>제23조(<u>과태료 부과·징</u> <u>수 등</u>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 ② <u>과태료의 부과·징</u> <u>수에 대한 이의신청은</u> <u>「질서위반행위규제</u> <u>법」에 따른다.</u></p>	<p>제23조(<u>과태료 부과·징</u> <u>수 등</u>) ① (개정안과 같 음) ② ----- ----- <u>이의제기는</u> ----- -----.</p>
<p>제25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 명·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<u>25명</u>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	<p>제25조(위원회의 구성) ① ----- ----- ----- <u>25명</u> ----- -----.</p>	<p>제25조(위원회의 구성) ① ----- ----- ----- <u>29명</u> ----- -----.</p>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각 호외 부분 중 “제15조제1항제3호사목”을 “제15조제1항제3호아목”으로 한다.

제23조의 제목 중 “부과·징수”를 “부과·징수 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과태료의 부과·징수에 대한 이의제기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른다.

제25조제1항 중 “25명”을 “29명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도시공원의 세분)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<u>제15조제1항제3호</u> <u>사목</u>의 도시공원 조례가 정하는 주 제공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.</p>	<p>제3조(도시공원의 세분) ----- ----- ----- <u>제15조제1항제3호</u> <u>아목</u>----- -----.</p>
<p>제23조(<u>과태료 부과·징수</u>) 시장이 법 제56 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은 영 제51조제1항 별표 4와 같다.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23조(<u>과태료 부과·징수 등</u>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</p> <p>② <u>과태료의 부과·징수에 대한 이의 제기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른다.</u></p>
<p>제25조(<u>위원회의 구성</u>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·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<u>25명</u>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	<p>제25조(<u>위원회의 구성</u>) ① ----- ----- <u>29명</u> -----.</p>